

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57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2025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
- 나. 청소년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 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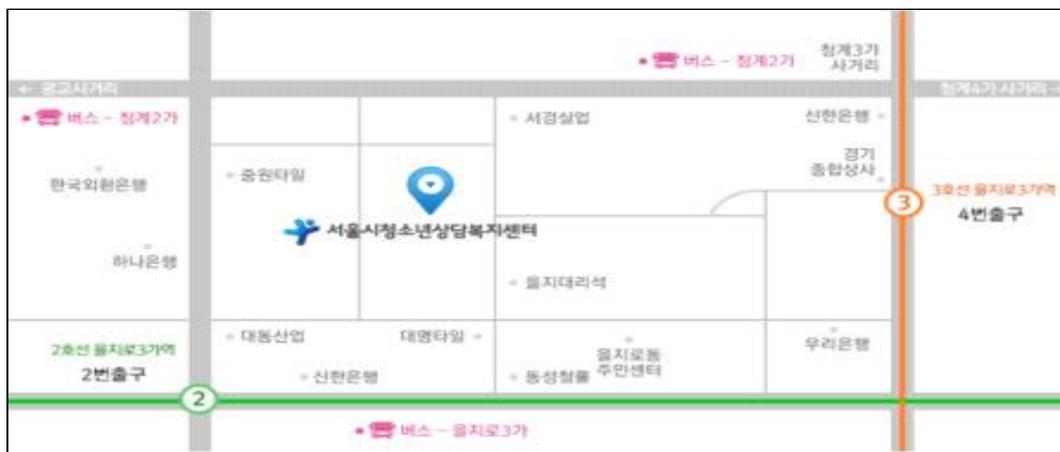
-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개인·전화·사이버·집단상담 등 상담사업
-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
- 부모·지역센터 등 상담자 교육사업
- 청소년안전망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(꿈드림)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
- 개관일자 : 1997. 9. 19.
- 시설규모 : 1,516㎡(지상 6층·7층)
- 이용대상 : 청소년(만9세~24세)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 7. 1. ~ 2028. 6. 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4,044백만원('25년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1,440백만원, 운영비 149백만원, 사업비 1,680백만원, 사업외지출 775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나래 (☎2133-4129)